

2007. 1. 23.(화)

제131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심사보고서

- 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자치행정위원회

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국장 김재식)

가. 제안사유

-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한방 특화 사업 및 일자리 창출, 주민 생활 지원 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 시민 만족도 제고를 위한 행정 조직 신설과
 - 고객지향적 행정 서비스의 효율성 제고와 성과 중심의 전략적 조직, 행정 조직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팀제 도입
 - 민선 4기 시정 시책의 역동적 추진과 행정 수요 및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조직 구조로 개편 조사 함

나. 주요내용

- 고객지향적 행정조직, 성과중심의 전략조직, 자율운영의 행정조직을 「팀제」 도입
 - 본청(2본부 35팀) : 미래경영본부, 행정복지본부
 - 직속기관 : 보건소(4팀), 농업기술센터(2팀)
 - 사업추진 역량 강화를 위한 본부 구성
 - 산업지원 및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경영본부와
 - 주민생활복지 기능 수행을 및 내부지원 기능수행을 위한 행정복지본부의

분리로 실행력 강화를 위한 조직구조 마련

- 전략적 시책 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의 신설
 - 신사업 기획, 타당성 분석 및 추진을 위한 전략사업팀 신설
 - 한방산업팀, 기업유치팀, 축제영상팀, 지역개발팀 등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담 부서의 신설
- 시민만족도 제고를 위한 조직의 신설
 - 주민생활지원기능 지원 체계를 위한 시민행복팀 신설 및 읍면동은 주민생활지원 및 사회복지 기능 중심으로 개편
 - 시민 대상의 평생학습 기능 강화를 위하여 산재되어 있는 관련기능을 일원화하여 수행하는 평생교육팀 신설
- 업무효율 강화를 위한 기능 조정
 - 농업관련 행정기능과 개발·지도 기능의 분리로 농업정책팀 및 농축 유통팀을 신설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분리
 - 도시관련 업무의 효율 제고를 위한 업무 조정
 - 도로 공사 및 감독은 도로하천팀
 - 도시 및 지역계획 관련업무는 지역계획팀
 - 도시정비, 가로·보안등 관리는 도시관리팀
- 읍면동 주민생활복지 기능 강화
 - 주민생활복지 지원기능 전담을 위한 시민행복담당 신설
 - 면지역 4개담당을 통합하여 3개 담당만 설치
 - 총무담당과 민원담당을 통합 ⇒ 행정담당
 - 산업 및 개발담당 통합 ⇒ 지역진흥담당
 - 동지역은 시민행복담당 신설
- 사업소 명칭 조정
 - 환경관리사업소 ⇒ 환경사업소
 - 청풍관광개발사업소 ⇒ 관광시설관리소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석윤)

가. 법규적 검토

- 지방자치법 제35조1항 1호에 조례의 제정과 개폐는 지방의회 의결 사항이며
- 지방자치법 제102조 (행정기구)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기구 설치의 일반요건) 제⑦항에 의거 실·국은 본부·단·부로, 과·담당관은 팀으로 각각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되었으며
- 지방자치단체 팀제운영지침(행정자치부 2005. 12) 팀제 기구의 직급기준으로 팀제하에서 “본부·단·부장”, “팀장”의 직급은 현행 “실·국장”,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직근 하위직급까지 허용하여 내용상 및 법규상 하자는 없다고 할 것임
-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와 동법 제42조(예고방법) 및 동법 제 43조(예고기간)에 의거 2006년 12월 15일부터 2007년 1월 4일까지, 예고 조례의 변경부분 (3본부에서 2본부로 변경)에 대하여는 2007년 1월 16일부터 17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의견을 수렴 하였으며
- 2007. 1. 17. 제천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의결사항으로 법규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나. 행정적 검토

-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코자 조직운영과 인력구조의 혁신을 통해 제천시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미래의 역할과 기능에 맞도록 제천시 행정조직을 재설계하고자 전문기관의 용역을 바탕으로한 조직안으로
- 다양한 의견을 수렴, 최선의 대안을 선택코자 시민설명회와 의원간담회를 통한 제천시 행정조직개편안을 설명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사항임.
- 다만, 행정기구를 설치 운영함에 있어서
 -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 독립성, 계속성
 - 기구의 사무와 적합한 규모의 적정성
 - 통솔범위, 기구의 능률성,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질의답변 요지

가. 질의요지

- 팀제의 명칭중 시민복지팀, 여성육아팀 등은 현실적으로 업무의 내용과 동떨어진 느낌으로 명칭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대한 의견은?(박성하 의원)
- 시민설명회와 의원간담회시 3본부로 추진하다가 갑자기 2본부로 급선회한 이유는?(박기석 의원)
- 여성육팀의 분장사무를 보면 업무량이 방대하다고 판단되며, 금번조직 개편이 단순히 자리바꿈식이 아닌 내부의 실리적 혁신에 대한 기대는? (양순경 의원)
- 전반적인 조직개편 이후 실적평가 시기와 평가기준은? (권건중 의원)
- 6급공무원 보직아웃제와 관련한 직원의 상실감과 사기저하 대비책은? (김봉수 의원)

- 현재 17개 실과를 통해서 시행하던 사업을 34개팀으로 업무를 세분화하여 추진하는데 따른 장점은 무엇인가?(강현삼 의원)

나. 답변요지 (자치행정국장 김재식)

- 부자연스런 명칭에 대한 것은 변경검토 하겠음.
- 조직개편을 준비하면서 2본부제도 검토하고 있었으며, 이유로는 먼저 주민대표기관인 의회와의 조율이 원활하지 못하였고 또한 행자부와 협의결과 팀제운영에 대한 지연으로 주민이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는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선택하게 되었음.
- 여성정책의 확대와 권익신장에 따른 업무가 증가추세에 있으며 금번 조직개편을 통하여 행정수요의 욕구에 대응하는 많은 변화가 올것이라 판단됨.
- 분기평가와 반기평가가 이루어지며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겠음
- 변화와 혁신의 시대에 부응하는 공직자의 마음자세가 필요하며 공정한 기회부여와 사기저하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안을 마련하겠음.

5. 소수의견

없음

6. 토론요지

일부 자연스럽지 못하다 판단되는 팀명칭 변경, 업무량의 편중성을 고려하여 2개본부간 팀수 조정,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 팀을 투자유치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결재선을 1단계 줄이며 부시장 직속팀으로 편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6명의원 전원 찬성)

8. 심사보고 붙임서류

1. 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부.
2. 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일부개정조례안 조문대비표 1부.
3. 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발의동의 서명서
사본 1부. 끝.

2007. 1. 22(월) 11:00
제131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

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자 치 行 정 위 원 회

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년월일 : 2007. 1. 22.

제 안 자 : 강현삼 위원

1. 수정이유

- 행정수요의 환경변화에 따른 고객지향적 행정서비스와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상정한 급번 조례안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결과 도출된 문제점과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인 부자연스러운 일부 팀 명칭을 수정하는 한편, 조직별 업무기능에 대한 시민의 이해 돋고, 업무의 특성을 고려한 조직의 재편성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조직의 역할과 기능을 도모코자 함.

2. 수정 주요골자

- 행정복지본부의 시민행복팀을 ⇒ 시민복지팀으로
- 행정복지본부의 여성육아팀을 ⇒ 여성유소년팀으로 각각 팀명칭을 변경하고
- 미래경영본부의 문화체육팀을 ⇒ 행정복지본부로
- 행정복지본부의 차량등록팀을 ⇒ 미래경영본부로 본부를 변경하며
- 미래경영본부의 기업유치팀을 ⇒ 투자유치팀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부시장 직속으로 편제함.

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3조(보좌기관의 설치) 부시장 직속기구로 “전략사업팀”을 둔다를 “전략사업팀, 투자유치팀”을 둔다로 변경, 미래경영본부의 기업유치팀을 명칭 변경하여 투자유치팀을 추가함
- 안 제5조(미래경영본부에 두는 팀) ①항의 “기업유치팀”과 “문화체육팀”을 삭제하고 행정복지본부의 차량등록팀을 추가하고, ②항 사무분장에 있어 1(산업기반시설 설치 및 기업유치), 4(중소기업육성), 8(생활체육사업), 9(공연등 문화·예술행사 지원)의 내용을 삭제하고 차량등록팀 업무인 차량등록 및 차량관리 내용을 삽입하며, 다음과 같이 각호의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1. 한방관련산업 육성 및 관리
 2. 축제 기획 및 운영
 3. 지역경제활성화 사업
 4. 관광시책 개발 및 홍보
 5. 문화재 지정·보존 및 관리
 6. 지역개발사업
 7.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8.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9. 도로 유지 및 하천 관리
 10. 도시정비 사업

11.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시설 설치 관리
12. 건축신고 및 허가
13. 교통편의시설 설치 관리
14. 차량등록 및 차량관리
15. 농림·축·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16. 농정업무 및 영농 운영 지원
17. 친환경농업 육성
18. 산림보호 및 산불방지
19. 자연보호활동
20.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 안 제6조(행정복지본부에 두는 팀) ① 내용중 시민행복팀을 시민복지팀, 여성육아팀을 여성유소년팀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문화체육팀을 평생학습팀으로, 뒤로 삽입하며 차량등록팀을 삭제함. ② 내용중 18(차량등록 및 차량관리)호를 삭제하고, 문화체육팀 소관업무인 생활체육사업, 공연 등 문화·예술행사 지원내용 삽입하며, 각호의 일련번호를 다음과 같이 부여한다.

1.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2. 조례·규칙의 제정·개폐 및 그 운영·관리
3. 조직관리 및 지도·감독
4.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5.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의 부과 및 징수
6.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7.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8. 공유재산관리
9. 각종 통계 조사
10.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11.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12.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13. 생활관공자의 보호 및 지원
14. 노인·아동·심신장애자·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
15. 묘지·화장장 및 납골당의 운영·관리
16. 호적 및 주민등록관리
17. 지적관리
18. 평생학습 관련업무 및 장학회 운영
19. 생활체육사업
20. 공연등 문화·예술행사 지원
21. 학사건립

○ 부칙 ① 내용중 별표서식 분야란에 분야별 내용중 여성육아를 여성 유소년으로, 시민행복을 시민복지로 ⑯의 시민행복팀장을 시민복지팀장으로 ⑲의 여성육아팀장으로를 여성유소년팀장으로 ⑳의 여성육아팀장을 여성유소년팀장으로 ㉑의 시민행복팀장을 시민복지팀장으로 ㉓ 시민행복팀장을 시민복지팀장으로 ㉔의 여성육아팀장 2군데를 여성유소년팀장으로 ㉕의 별표서식 내용중 시민행복팀 2군데를 각각 시민복지팀으로, 여성육아팀을 여성유소년팀으로 변경함.

조 문 대 비 표

□ 제천시정조정위원회조례

개 정 안		수 정 안																							
제6조(간사) ① (현행과 같음) ② 간사는 업무담당자가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별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는 위원회 (제3조제11호 관련)		제6조(간사) ① (생략) ② 생략 【별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는 위원회 (제3조제11호 관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분야별</th> <th>위 위원회명</th> <th>근거규정</th> </tr> </thead> <tbody> <tr> <td>기획예산</td> <td>1. 기획예산위원회</td> <td>• 세천시기획예산위원회 제7조</td> </tr> <tr> <td>자치운영</td> <td>1. 자부민정보상담위원회</td> <td>• 세천시자방공부민직무 발명보상 조례 제23조</td> </tr> <tr> <td>여성옹호</td> <td>2. 세인십자위원회</td> <td>• 세천시자방공부민위제안 규칙 제12조</td> </tr> <tr> <td>회계</td> <td>1. 공유재산 심의위원회</td> <td>• 세천시공유재산관리조 례</td> </tr> <tr> <td>의성유아</td> <td>1. 청소년자립지원 기금관리위원회</td> <td>• 세천시청소년자립지원 사업기금관리운용 조례 제7조</td> </tr> <tr> <td>시민행복</td> <td>2. 영세민생활안정기 금관리심사위원회</td> <td>• 세천시영세민생활안정 기금운용 조례 제7조</td> </tr> <tr> <td>관광</td> <td>1. 세천시상포권심사 위원회</td> <td>• 세천시캐릭터상포권사상 에 관한 조례 제10조</td> </tr> </tbody> </table>		분야별	위 위원회명	근거규정	기획예산	1. 기획예산위원회	• 세천시기획예산위원회 제7조	자치운영	1. 자부민정보상담위원회	• 세천시자방공부민직무 발명보상 조례 제23조	여성옹호	2. 세인십자위원회	• 세천시자방공부민위제안 규칙 제12조	회계	1.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 세천시공유재산관리조 례	의성유아	1. 청소년자립지원 기금관리위원회	• 세천시청소년자립지원 사업기금관리운용 조례 제7조	시민행복	2. 영세민생활안정기 금관리심사위원회	• 세천시영세민생활안정 기금운용 조례 제7조	관광	1. 세천시상포권심사 위원회	• 세천시캐릭터상포권사상 에 관한 조례 제10조
분야별	위 위원회명	근거규정																							
기획예산	1. 기획예산위원회	• 세천시기획예산위원회 제7조																							
자치운영	1. 자부민정보상담위원회	• 세천시자방공부민직무 발명보상 조례 제23조																							
여성옹호	2. 세인십자위원회	• 세천시자방공부민위제안 규칙 제12조																							
회계	1.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 세천시공유재산관리조 례																							
의성유아	1. 청소년자립지원 기금관리위원회	• 세천시청소년자립지원 사업기금관리운용 조례 제7조																							
시민행복	2. 영세민생활안정기 금관리심사위원회	• 세천시영세민생활안정 기금운용 조례 제7조																							
관광	1. 세천시상포권심사 위원회	• 세천시캐릭터상포권사상 에 관한 조례 제10조																							

□ 제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관리운용조례

개 정 안		수 정 안
제11조(회계공무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기금운용관은 <u>시민행복팀장</u> 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11조(회계공무원) ① (생략) ② <u>시민복지팀장</u> 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자로 한다.

□ 제천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기금관리운용조례

개 정 안		수 정 안
제10조(회계공무원) ① (현행과 같음) ② <u>여성육아팀장</u> 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10조(회계공무원) ① (현행과 같음) ② <u>여성유소년팀장</u> 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자로 한다.

□ 제천시 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

개정안	수정안
제5조(실무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여성육아팀장-----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실무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여성유소년팀장-----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실무위원회의 간사) ① (현행과 같음) ②-----업무담당자-----	제7조(실무위원회의 간사) ① (생략) ②-----생략-----

□ 제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개정안	수정안
제4조(실무협의체) ① (현행과 같음) ②----- ----- 시민행복팀장 및 보건소 건강증진 팀장-----	제4조(실무협의체) ① (생략) ②----- ----- 시민복지팀장 및 보건소 건강증진 팀장-----

□ 제천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개정안	수정안
제12조(기금 관리공무원) ① (현행과 같음) ②-----시민행복 팀장-----업무담당자-----	제12조(기금 관리공무원) ① (생략) ②-----시민복지팀장----- 생략-----

□ 제천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개정안	수정안
제21조(구성 및 임기)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본부장, 기획예산팀장----- ④ (현행과 같음)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여성육아팀장-----	제21조(구성 및 임기)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개정안과 같음)----- ④ (생략)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여성유소년팀장-----
제32조(회계공무원) ①----- -----여성육아팀장-----	제32조(회계공무원) ①----- -----여성유소년팀장-----

□ 제천시사무의 읍면동위임조례

개정안		수정안	
【별표 1】 읍·면·동 권한위임사항			
【별표 1】 읍·면·동 권한위임사항		【별표 1】 읍·면·동 권한위임사항	
인적자원팀	1. 소내 공무원의 보직 발령	인적자원팀	1. 소내 공무원의 보직 발령
시민행복팀	1. 의료급여증발급(개사용)	시민복지팀	1. 의료급여증발급(제사용)
시민행복팀	2. 의료급여대상자증명서발급	시민복지팀	2. 의료급여대상자증명서발급
경로재활팀	3. 개장신고	경로재활팀	3. 개장신고
경로재활팀	4. 배상신고	경로재활팀	4. 배상신고
경로재활팀	5. 화장신고	경로재활팀	5. 화장신고
경로재활팀	6. 개장, 매장, 화장신고필증 교부	경로재활팀	6. 개장, 매장, 화장신고필증 교부
여성용아팀	7. 모·부자가정증명서의 발급	여성용아팀	7. 모·부자가정증명서의 발급
세무부과팀	1. 시세 과세자료조사 보고	세무부과팀	1.....생략.....(생략).....
	1. 시세징수 및 체납처분	
	2. 시세 납세고지서 독촉장 체납고지서 제 송달	
	3. 과세표준액 결정에 따른 특성 및 가격조사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
세무징수팀	4. 시세 체증명 발급	지방세법 제38조 제2항
세무징수팀	5. 수입증지 판매	제천시수입증지조례 제8조 지방재정법 제44조
	6. 당해 읍면동에서 발생하는 세 외수입의 징수 결정 및 감액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의2
	7. 지방세고지서송달요원 위촉 대상자 선정 및 관리 (위촉대 상자 선정 및 배부업무에 한함)	제천시세조례 제16조의2

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발의서명서

의원 성명	서명 표는 네임	직위
김봉수	<u>김봉수</u>	의원장
강현승	<u>강현승</u>	간사
최건강	<u>최건강</u>	
양수경	<u>양수경</u>	
박기식	<u>박기식</u>	
박성재	<u>박성재</u>	